

**화협상담실은
보험과 안전점검, 방재기술지도 등
특수건물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궁금증과 알고 싶은 사항을
풀어드립니다**

방재상담

☞ 비상콘센트를 설치하려 합니다. 시설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비상콘센트 설비의 설치기준은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 공급용량은 3상교류 200볼트로서 30암페어의 것과 단상교류 100볼트로서 15암페어인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전원회로는 각층에 있어서 전압별로 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3.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4. 비상콘센트의 플러그는 3상교류 200볼트의 것에 있어서는 4극플러그 접속기를, 단상교류 100볼트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2극플러그 접속기로 하여야 합니다.
5. 전선은 600볼트 2중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연성을 지닌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은 내화구조의 주요 구조부에 매설하는 등 내열효과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피난구 유도등은 옥내로부터 피난층 또는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하여 화재발생 장소로부터 인명을 안전하게 피난시킬 수 있도록 피난을 유도하는 조명장치로서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위치는 피난


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밝기는 피난구로부터 30미터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깔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 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등을 하면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 의하여 20분 이상 점등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피난구 유도등의 종류에는 대형, 중형, 소형이 있으며 소방대상물의 용도에 따라 유도등의 설치 유형이 다르게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동확산 소화용구란 무엇이며 설치 기준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 자동확산 소화용구란 감시가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의 위험장소에 설치하는 간이 소화용구로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소화약제가 자동확산 되는 것으로 파열식 자동확산 소화용구와 분사식 자동확산 소화용구로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파열식 자동확산 소화용구는 두께 3mm 이내의 경질유리를 용기로 하여 용기내에 들어 있는 약제의 팽창압력에 의하여 파열됨과 동시에 소화되고 분사식 자동확산 소화용구는 이용성 물질(푸우지블 링크)이 용융하여 충전된 소화약제가 분사, 소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A급화재 및 B급 화재에 적용하며 1단위의 소화능력이 있습니다. 설치 장소로는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주방, 대량화기 취급소 등으로서 바닥면적 20평방미터 이하의 대상물에 한하여 바닥면적 10평방미터 마다 1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보험상담

☞ 국유재산법·시행령에 따른 정부제 2청사 건물의 화재보험계약을 농협 화재공제에 가입하였을 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보험에 가입등)에서 규정한 손해보험이 농협공제회가 영위하는 공제를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중 “손해보험”이라함은 상법 및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가 영위하는 보험을 말하는 것이며,

2. 농업협동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공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서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제는 공제회원을 위한 이익단체로서 보험이 아니므로, 동 농협공제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64조의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담보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전소(사업장)에서 용기에 충전된 것이 운반차에 실려 운반과정에 있는 것과 탱크로리에 실려 운반과정에 있는 것이 목적지에 도착 인계될 때까지 위험담보 대상 여부.

2. 용기 및 부품제조업자가 도산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그 업체 제품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로 판명되었을 경우 배상책임 여부.

3. 외제 용기에 의해 유통되고 있는 것의 배상책임 문제.

4. 판매자와 같은 건물내에 있는 사용자에게 공급한 가스의 사고시 보상(판매자의 책임이 있을 경우)문제.

답: 1.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가스사업장에서 부터 가스의 최종 소비단계까지 가스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2. 용기 등의 제조업자가 도산하였을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기간중이면 용기 등 제조업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3. 외제용기에 의하여 가스가 유통될 경우 외제용기의 수입업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무는 없으나, 용기등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고자 하면 별도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 판매자가 같은 건물내에 있는 사용자에게 공급한 가스의 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판매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가. 판매자가 임차인이면 판매자 사용부분의 건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기타 사용자를 포함한 제3자의 재물 및 인명손해는 보상합니다. 판매자 사용 건물부분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는 “임차자특별약관”을 첨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판매자가 건물소유자이면 사용자 소유의 재물과 인명손해를 보상합니다.

☞ 당행(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귀협회에서 사정한 보험금액이 현저히 낮아 당행의 장부 가격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이재로 인한 지급 보험금의 계산방법은

1. 보험금액인 장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지급보험금을 산정 지급하는지?

2. 또는 귀협회가 이재 당시에 보험가액을 별도로 사정하고 이를 기준으로하여 지급 보험금을 산정 지급하는지?

답: 화재보험의 지급보험금 산정에 있어 보험가액은 이재발생시점의 실제 시가를 별도로 사정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현저히 미달되면 손해액의 일부만 보상받게 되므로 시가와 근접한다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부보하시기 바랍니다. ☞